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5. 12.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4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5월 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 5. 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가. 개정이유

-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한도·이자 및 상환조건이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담보 조건부로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특례보증제도 실시로 용자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설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건축, 구입, 입차 등에 필요한 자본적 고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제4조(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중소기업 지원시설인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원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 어려운 경제여건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건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적절하다 사료되나,
- 다만, 기금출연 시 원금회수가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금 감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
----------	----

제출년월일 : 2004. 4. 2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 이유

- 가.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한도·이자 및 상환조건이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담보 조건부로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특례보증제도 실시로 용자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설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건축, 구입, 임차 등에 필요한 자본적 고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제4조(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자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나. 중소기업 지원시설인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신설
- 다.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수당 지급

#### 3. 참고 사항

- 가. 관련근거
  - 구청장 방침-730호(2003.9.29) 및 서울시산업 16310-1384 (2003.8.25)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조치요구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협의여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입법예고 : 실시완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용도)</p> <p>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및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p>	<p>제2조(기금의 용도)</p> <p>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li> <li>2.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li> <li>3.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li> <li>4. 기타 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li> </ol> <p>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